

[]쉼터의 장
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[]사업계획 변경신고서
[]소재지
[]시설의 구조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일	처리기간	7일
신고인	성명(대표자)	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명		
	소재지(주소)	(전화번호 :)		
쉼터	명칭			
	쉼터의 장 성명			
	변경 연월일			
변경사항	쉼터의 장	성명	생년월일	
	사업계획			
	소재지 (시설의 구조)	변경 전		
		변경 후		
변경사유				

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
[]쉼터의 장 []사업계획 []소재지 []시설의 구조 변경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1. 별지 제20호의23서식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정서 1부 2. 변경사항에 따른 서류 가. 쉼터의 장 변경의 경우: 변경 사유서(법인인 경우에는 쉼터의 장에 대한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) 및 변경된 쉼터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나.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: 변경 사유서(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)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각 1부 다. 소재지 또는 시설 구조 변경의 경우: 변경 사유서(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또는 시설 구조에 대한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)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각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 리 질 차

